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2-13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범죄예방 지원 부분을 구체화하여 범죄의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수립에 복지,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및 동작경찰서와 협업 사항을 추가함(안 제4조제2항)
- 나. 실태조사 실시 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제2항)
- 다.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규정함(안 제7조제1항)
- 라. 조례의 체계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분야별 발전시책” 을 “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련” 을 “서울 동작경찰서 등 관련” 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, 성별,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1인가구에 대한 질병, 돌봄,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
- 4.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
- 6.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

제8조의 제목 “(시설 설치·운영)” 을 “(지원시설 설치·운영)” 으로 한다.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지원시설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포상)” 을 “(표창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포상” 을 “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분야별 발전시책,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관련</u>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실태조사)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7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돌봄서비스,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</u>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서울 동작경찰서 등 관련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실태조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, 성별,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제7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<u>1인가구에 대한 질병, 돌봄, 응급</u></p>

2. 3. (생략)

4.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

5. (생략)

<신설>

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시설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

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(생략)

제10조(포상)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

1.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4.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

5. (현행과 같음)

6.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지원시설 설치·운영) 구청장은

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10조(표창) -----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-----.